

제11조(회계 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보건사회국장
2. 분임운용관 : 가정복지과장
3. 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계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산 및 보고)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부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 계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94년 6월 18일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94년 6월 20일
- 라. 상정일자 : 94년 6월 26일(제4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경호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관련 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등 부친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적용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(시험수당 지급기준)

- 출제수당
 - └ 객관식 : 2,300원(문제당)
 - └ 주관식 : 45,000원(과목당)
- 채집수당 - 주관식 : 25,000원(기본 10부)
- 문제선정 심의수당 : 35,000원(과목당)
- 감시수당(일당)
 - └ 평일 : 6,000원
 - └ 휴일 : 10,000원
- 면접(실기)시험수당
 - └ 30,000원(5급이상)
 - └ 15,000원(6급이하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• 지금까지는 수당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였는지? • 현실적으로 수당액수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? • 시험출제의 문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?	• 도조례에 기준을 두고 지급하였음. • 외부인사가 아니고 공무원에게까지 지급되는 수당임. • 관내 대학교수 및 문제은행에서 출제하고 있음.

4. 토론유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휴일 : 10,000원

- 면접(실기)시험수당 — 30,000원(5급이상)
 └ 15,000원(6급이하)

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수당은 “별표”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 제2조 “별표”중 부천시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객관식 채집에 종사한 때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험수당지급기준표

(단위 : 원)

수 당 별	구 분		수 당 액	비 고
출 제 수 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(문제당)	2,300	
	주 관 식	" (1과목위원당)	45,000	
채 점 수 당	객 관 식	6급이하 시험 (응시자 1인 1과목)	40	
	주 관 식	10부까지 기본료	25,000	
		1부 초과 부당	660	
면 점 및 실 기 시 험 수 당	5 급 이 상 (일 당)	10명까지 기본료	30,000	상한
		10명 초과 1인당	1,000	50,000
	6 급 이. 하 (일 당)	10명까지 기본료	15,000	상한
		10명 초과 1인당	500	50,000
	종 사 원	일 당	6,000	
문 제 편 집 편 찬 수 당	일 당		7,000	
문 제 선 정 심 의 수 당	과 목 당		35,000	
감 시 수 당	휴 일		10,000	
	평 일		6,000	

비고 :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